

실적부 미래채권담보대출 협약서(구매기업용)

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니다)과 _____(이하 “구매기업”이라 하고, “은행”과 합쳐 “양 당사자”라 합니다)는 상호 협력하여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은행의 「실적부 미래채권담보대출」 결제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(이하 “이 협약”이라 합니다)을 체결합니다.

제 1 조 (목적)

이 협약은 구매기업과 물품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협력기업의 원활한 납품을 위한 생산자금 등의 금융지원을 위하여, 은행이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하여 「실적부 미래채권담보대출」을 지원함에 있어 은행과 구매기업간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(협력기업의 정의)

“협력기업”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, 은행과 “미래채권담보대출(이하 “미래대출”이라 합니다)” 여신약정을 체결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의 전자결제에 의해 결제받는 채무자를 말합니다.

제 3 조 (기본 협약사항)

① (정보교환)

양 당사자는 협력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상호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합니다.

② (협력기업의 추천)

1. 구매기업은 거래 협력기업에 대하여 은행과 사전에 협의된 방식으로 은행과 (기술)신용보증기금(기술)신용보증서 담보인 경우에 한함)에 각각 통보합니다.
2. 구매기업은 은행과 (기술)신용보증기금에 통보된 협력기업과의 거래종료 등 계속거래가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협력기업 취소를 은행과 (기술)신용보증기금((기술)신용보증서 담보인 경우에 한함)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
③ (납품실적 제공 등)

구매기업은 협력기업과의 납품실적을 다음 각 호 와 같이 은행에게 제공하기로 합니다.

1.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납품실적
2. 최근 계약서 사본
3. 평균 결제기간(발주일로부터 최종 대금 결제일까지의 최근 1년간 평균 결제일)
4. 매년 결산일 이후 제공

④ (대금의 지급)

1. 구매기업은 사전에 약정된 전자결제 방법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, 구매론, 현금이체 등)을 이용하여 협력기업에 대한 결제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2. 구매기업은 추천한 협력기업에 대한 결제방법 및 전자결제 은행을 당행의 서면 혹은 전문등의 없이 변경하지 않기로 합니다.

제 4 조 (시스템 운용 및 손해배상)

- ① 시스템 운용은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전자적인 방식 등을 이용하며, 외부요인에 의하여 구매기업이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어느 당사자 일방이나 양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, 은행의 전산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고 구매기업의 전산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구매기업이 부담하기로 합니다.
- ② 양 당사자 혹은 당사자 일방이 전산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한 손해를 협력기업으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는 경우, 각 당사자는 협력기업이나 제 3자에 대한 배상 청구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.

제 5 조 (협약서 효력)

-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20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로 합니다.

② 양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서면에 의한 해지 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상대방이 해지통보를 수령하기 전까지 발생한 대출실행 건에 대해서는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.

제 6 조 (계약증명)

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고 은행과 구매기업이 상호 서명 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합니다.

제 7 조 (관할법원의 합의)

이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제 8 조 (특약사항)

20 년 월 일

[구매기업]

[은행]

_____ (인)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_____ (인)

주 소 :

주 소 :